

# 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4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731,390,638	21,941,719
일반회계	715,626,961	21,468,809
특별회계	15,763,677	472,910
기타특별회계	15,763,677	472,910
상수도	9,401,765	282,053
의료급여기금	2,139,071	64,172
기초생활보장기금	2,340,537	70,216
주민소득지원기금	1,703,293	51,099
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	179,011	5,37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없음"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8,864,208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,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제4회 추경 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간주예산으로 처리한다. 다만 군비부담금은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며, 간주예산으로 처리된 사업 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에 포함한다.